

보상위원회규정

2026.03.26.

IPARK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보상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5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年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결의사항)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사내 등기이사, 본부장 이상 경영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3.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등의 상시점검
4.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5.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8조 (보고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전문가의 조력)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